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해 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1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15호)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99호)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11호)
-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64호)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2호)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02호)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4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I .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1호)	1
가. 제안경위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2. 문금주의원 대표발의(1)(의안번호 제2201015호)	2
가. 제안경위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3.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99호)	3
가. 제안경위	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4. 문금주의원 대표발의(2)(의안번호 제2201711호)	5
가. 제안경위	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
다. 참고사항	6
5. 정희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64호)	7
가. 제안경위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7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32호)	8
가. 제안경위	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8

7.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061호)	10
가. 제안경위	10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0
8.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02호)	12
가. 제안경위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2
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24호)	15
가. 제안경위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

II. 검토의견

1. 개정안 제안 배경	16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17
3. 개정안 의원별·주요내용별 비교표	18
4.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피해추가	19
5.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추가	28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36
7. 재해 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	43
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마련	63
9.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 근거 마련	66
10. 보조 및 지원, 농업재해 정의에 농어업재해보험 및 보험목적물 정의 신설	75
11. 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92
12.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96

13.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피해보상 대책 마련	100
14. 심의위원회 구성	105
15.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115
16.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	119
17. 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 마련 ...	123
18. 부칙	126

[참고자료]

참고 1.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128
참고 2.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2023년)	131
참고 3. 해외 농업재해대책 비교	133

I. 개 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08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24.

(3) 회 부 일 : 2024. 6.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농어업 현장의 재해피해 규모와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반면 우리 농어업 현장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경영 여력 악화로 농어업재해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임. 농어업의 회복탄력성이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어업의 경영 안정을 보장해야 할 농어업재해대책은 재해 피해에 대한 단순 복구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등).

2.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1)(의안번호 제220101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 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통해 농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이들이 의존하는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먹이가 줄어들고 꿀벌들이 농작물 꽃가루받이를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함.

또한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추가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3.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69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7. 12.
- (3) 회 부 일 : 2024. 7.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4.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안(2)(의안번호 제220171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금주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축산업은 자연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및 국가 식량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어업인들의 생계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영향까지 겹치며, 농수축산업인들의 생존권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고 있음.

이러한 위기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예방 및 대비하고 재해를 복구하는 등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안정과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여 국가가 기후위기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

적 삶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4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5. 정회용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76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회용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7. 15.
- (3) 회 부 일 : 2024. 7.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폭염, 한파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현상 외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상고온(異常高溫)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커져 이를 농업재해로 정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업재해 중 기온과 관련한 자연현상으로 한파와 이상저온, 폭염을 규정하고, 이상고온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균형적으로 이상고온 현상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으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유발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양상의 재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6.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0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현의원 등 27인
- (2) 제 안 일 : 2024. 7. 19.
- (3) 회 부 일 : 2024. 7.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재 전국적인 호우로 지역 주민들과 농업인들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보조 및 지원은 실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나, 이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특별지원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농업인들의 생산비를 고려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재해대책 마련 및 지

원 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제4호 및 제4조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입은 농·어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재해예방과, 농·어가 지원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일정요건 충족 시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7.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06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21인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 및 어업의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 생산량 향상과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됨.

최근 기후 위기로 야기되는 가뭄, 태풍, 냉해,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해 시설 철거비 및 복구비와 생계 안정, 경영 유지를 위해 보조 및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농어민의 경우 생산물의 생육시기가 장기간이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을 경우 수확량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적인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방안에 농업정책자금 및 수산업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생산량 감

소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생산의욕을 고
취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항, 제4조의3
신설).

8.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102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7. 22.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대책을 마련하여 농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재해 피해로 인한 농어가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에 이상고온(異常高溫)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등).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9.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212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23.
- (3) 회 부 일 : 2024. 7. 2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업재해로 인한 생계구호와 피해복구를 보조 및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그 피해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농어업인 재해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고,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보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으로 보상받고 있는데, 가입률은 50%대로 저조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하고,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외의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농가와 어가를 보호하여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 제안 배경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농작물 침수·가축 폐사 등 재해 피해로 인하여 재산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나 생계비 지원 등 생계구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농어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9건의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할 때에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에 가입하진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제21대국회 심사경과

제21대국회에서도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대책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보조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총 1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이 중 ① 황사를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020.12.15.) ② 재해복구비보다 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차액지원 대상을 「농어업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023.5.12.)가 각각 수정의결되었음.

그 밖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① 재해 피해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해복구비에 생산비 등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② 농어업재해대책의 기본 취지가 구호와 복구 지원 원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생산비 등 손실 보전은 재해보험을 통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그 밖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임기만료폐기(2024.5.29.)되었음.

3. 개정안 의원별·주요내용별 비교표

구분		문대림의원	문금주의원	이원택의원	정희용의원	박수현의원	서삼석의원	윤준병의원	여기구의원
농업재해 유형		이상고온 추가	이상고온·지진 추가	-	이상고온 추가	-	-	이상고온 추가	-
재해대책 수립	수입시기	-	-	3년	-	2년	-	5년	-
	국회보고	-	-	-	-	국회 보고	-	-	-
재해대책 포함 사항 추가		생 산 비 보장(1개)	-	생 산 비 보장 등(4개 항목)	-	생 산 비 고려	-	생 산 비 보장 등(5개 항목)	-
보조 및 지원 변경	지원 내용	생 산 비 보장	-	인 건 비 추가	-	-	금리 인하	생 산 비 보장	-
	지원 기준	실거래가 고려	-	실 거래 물가 상승률 고려	-	생 산 비 상승률 고려	-	실거래가 수준	실 거래 물가 상승률 고려
	지원 금액·차액 지원 등	-	-	·지원금 ·차액 지원	-	재 해 보 험 입 지 ·재 미 가 농 원 근 거	-	·지 원 금 ·차 액 지 원 ·재 해 보 험 입 지 ·재 미 가 농 원 근 거	재 해 보 험 입 지 ·재 미 가 농 원 근 거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		-	-	시민단체 추천·기후전문가 1명 이상	-	-	-	농림업체인 대표 1/3 이상	-
기타	응급조치 종사자 보상	-	-	응급조치자 근거리 응급보상 마련	-	-	-	응급조치자 근거리 응급보상 마련	-
	통계 수집	-	-	재해 피해 통계 수집 의무화	-	-	-	재해 피해 통계 수집 의무화	-
	신고 방법 안내	-	-	재해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	-	-	재해 피해 신고 방법 안내 의무화	-
	피해 보상 대책	-	-	-	-	-	생 산 량 상 손 해 채 보 의 소 해 채	-	-
	재해 대책	기후 변화 대응 대책	-	-	-	-	-	-	-
	특별재지역	-	-	-	-	특별재지역 농지포괄 농업영역 지정	-	-	-
	재해대응금	-	재해대응금 설치	-	-	-	-	-	-

4.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문대림의원안(1)·문금주의원안·정희용의원안·윤준병의원안 제2조제2호) 피해추가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정의 규정상 재해의 유형에 이상고온(문대림의원안·문금주의원안·정희용의원안)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1)· 정희용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u>이상고온(異常高溫)</u> , 우박----- ----- ----- ----- ----- ----- ----- ----- -----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지진, 해일, 태풍, 강풍, <u>이상저온(異常低溫)</u> , <u>이상고온(異常高溫)</u> ----- ----- ----- ----- ----- ----- ----- ----- -----

현행	문대림의원안(1)· 정희용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문금주의원안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 ----- ----- ----- ----- ----- ----- ----- ----- --.	----- ----- ----- ----- ----- ----- ----- ----- ----- ----- -.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3. ~ 13. (현행과 같음)

□ 동법 제2조에 따르면,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그 밖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현행법상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저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명시되어 있으나, 여름이 아닌 시기에 기온이 평년보다 유난히 높게 나타나는 ‘이상고온’에 따른 피해는 ‘농업재해’의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문대림의원안, 정희용의원안, 문금주의원안은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특히 문금주의원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꿀벌 활동시기가 식물의 생태주기와 맞지 않아 작물 개화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있음을 감안한 취지임.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을 추가하여 지원의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을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려는 의견을 제시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3) 검토의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4조에 따라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① 가뭄 피해의 경우 양수(揚水)에 들어간 유류대금 및 전기료 등을 ②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에는 농약대금을, 농작물 등을 다시 심는 경우에는 종묘대¹⁾와 비료대를,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는 어린 가축의 구입비 등을 보조·지원하여야 함.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1) 식부(植付, 경작지에 작물을 심는 일)한 묘 등의 비용, 묘를 자기 묘장에서 기른 경우 그 종자나 종서의 비용만을 계상하고, 묘를 기르는데 들인 노력, 재료, 농약 및 농구 등의 비용은 각각 해당하는 비목에 계상함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 농업재해대책 사업개요 】

□ 관련규정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제4조제7항 : 농어가 지원 기준과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

□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농업경영에 필요한 복구비를 지원
 - 대파대(종묘·비료대), 농약대, 입식비(어린가축 구입비), 시설복구비 등
- (간접 지원) 농작물 피해가 큰 농가에 대하여 지원
 -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등
- (공공시설 복구비)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 저수지, 양배수장, 배수로 등 피해복구 시설
- (농업정책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 및 신규자금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기 대출 농업정책자금의 이자감면 및 상환연기
 - * 피해율 30이상 50%미만 농가는 1년, 50% 이상 농가는 2년 지원
 - 원활한 영농복구를 위해 피해농가에 융자 추가 지원(재해대책경영자금)
 - * 고정금리 1.8%, 또는 6개월 변동, 대출기간 1년(일반작물 1년, 과수·인삼 3년 연장가능)

□ 재해대책비의 주요항목 복구비 단가 및 부담률

복구비 항목		지원단가(예시)	복구비 부담률(%)			
			보조		용자*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작물	농약대	일반작물 74만원/ha, 과수류 249만원/ha	70	30	-	-
	대파대	일반작물 380만원/ha, 사과 1,763만원/ha	35	15	30	20
가축 : 입식비		양봉 140,760원/군, 토봉 250,000원/군 산란계 1,877원/마리, 돼지 211,500원/마리	35	15	30	20
농림시설 : 복구비		비닐하우스(내재해형07, 단동1,2) 21,941/m ² 비닐하우스(내재해형07, 연동1) 28,807m ²	24.5	10.5	55	10
생계지원비		3인 가구 100만원, 4인 가구 123만원	70	30	-	-
고교생 학자금 면제		전 남(사립, 읍면) 44만원	70	30	-	-

* 용자 조건 : 금리 1.8%,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사업 추진 절차

- 피해발생 신고(농업인)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자체) → 중앙합동조사(중앙·지자체, 필요시) → 복구계획 심의(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 복구비 예산 집행

□ '24년 예산 : 2,800억원(전년 대비 40% 증액)

- '23년 지원액(국비) : 1,700억원

* ('19) 75,047 → ('20) 134,485 → ('21) 146,856 → ('21) 146,856 → ('22) 70,93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 한편, 폭염 기준은 낮의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로 정의함²⁾.

기상청에서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35℃ 이상으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함.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재해 대책 사업에서는 통상적으

2) 기상청 날씨누리, https://www.kma.go.kr/weather/warning/safetyguide_heat.jsp

로 30℃ 내외의 고온 지속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피해는 ‘폭염’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온뿐 아니라 가뭄, 시설상태(환기, 냉방장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를 포괄하여 입식비, 농약대, 대파대 등의 복구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함.

□ 이상고온은 계절적 평균기온을 초과하는 고온 현상으로, 낮의 일최고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폭염과 밤의 일최저기온이 특정 기준값을 넘으면서 발생하는 열대야를 포함함³⁾.

○ 이상고온 현상은 농작물의 생육 부진, 수량 감소, 양분 결핍, 해충 발생, 품질 저하로 이어져 농가수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처럼 이상고온은 폭염을 포함하여 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지구온난화의 본격화로 이상고온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남을 감안하면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의 범주에 포함하여 농업인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하려는 것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한 것은 2021년 7~8월이었으며,
최근 10년 대표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살펴보면 이상고온과 폭염도 많은 피해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음.

3) 박태원·박현빈 등 5인, “한반도에서의 이상고온 발생의 지역적 특징”, <과학영재교육> 제13권 1호, 2021.

【 폭염으로 인한 피해 및 복구비 지원 현황 】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2021년 7~8월 폭염	5개 시도 (경기·충북· 충남·대전·세종) 과수 일소피해, 인삼 잎마름 등 피해 * 피해 농가수: 2,102호	- 농작물 1,546ha * 인삼 1,199, 사과 216, 포도 38, 수박 13, 오이 11, 상추 8, 파 7, 배추 6, 자두 6, 콩 5, 고추 5, 옥수수 4, 복숭아 3 등 - 가축폐사 3천수(육계)	6,103백만원 -보조 5,898(국비 4,129) -융자 123 -자부담 82 * 영농자금 상환연기 8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 최근 10년 대표적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

년도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 현황
2010년	한파와 대설	중부지방 대설 및 한파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발생 경기, 강원 등 중부지방 30cm 이상의 대설로 시설하우스 및 인삼재배시설 파손 1.6-9일 전국적인 한파(최저기온 -20℃이하로 과수동해 발생)
2011년	겨울한파, 7월 집중호우	1~2월 한파로 인해 전남, 전북, 경남지역 농작물 피해 7.7-16일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51천ha, 가축 37만 마리 7.26-29일 호우 피해: 농작물 침수 1.7천ha, 가축폐사 30만 마리
2012년	연이은 태풍의 상륙	비닐하우스 1,776ha, 농작물 315,781ha 등 (피해액 306,667백만원)
2013년	여름철 고온현상	닭, 오리 등 가축폐사(705농가, 1,985천 수 폐사)
2014년	2월 최장기간 대설	비닐하우스 41ha, 인삼재배시설 12ha, 축사4ha 등 농축산시설 82ha 파손, 농작물 59ha, 가축 67천수 등 피해
2015년	11~12월 이상고온	남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농경지에서 농작물 시들음 현상 등 가뭄 피해 발생 간척지 농업용수 염도 상승으로 벼 피해(서산 1,939ha, 태안 2,758ha 등)

년도	이상기후	농업 분야 피해 현황
2016년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과실 일소 및 농작물 고사(16,599ha), 가축 폐사(4,444,876마리)
2017년	5월 이상고온, 7월 폭염	가축 5백만 마리 이상의 피해
2018년	7~8월 전국적 폭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수 일소피해 및 농작물 피해(22,509ha), 가축폐사(전국 9,078,528마리)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태풍영향	태풍 다나스(충남,전라,제주), 링링(전국), 타파(제주,경상), 미탁(강원,전라,경상,제주)에 의한 농작물 침수 농경제 유실·매몰, 농업시설 파손 등
2020년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4월(이상저온43,554ha 피해), 5-6월(우박 1,273ha), 7-8월(집중호우 34,175ha), 8-9월(태풍 123,930ha)

※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2.

5. 농업재해 정의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추가(문금주의원안 제2조제2호)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우리나라는 디지털관측(1999년) 이후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8회, 규모 3.0(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4회 발생하고 있음⁴⁾

그러나 현행법상 농업재해의 유형에는 지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의 범위에 ‘지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문금주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u>해일</u> ,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지진</u> , <u>해일</u> ,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u>이상고온(異常高溫)</u> ----- ----- ----- ----- ----- ----- -----

4) 기상청 온라인 지진과학관, <https://www.kma.go.kr>

현행	문금주의원안
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 ----- ----- ----- -----.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환경의 변화로 한반도 곳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의 범위에 ‘지진’을 추가하여 지원의 확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법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을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려는 의견을 제시함.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진에 의한 농작물, 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 신고가 없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진 피해복구비 지원실적이 없다고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 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3) 검토의견

□ 과거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디지털 관측(1999년) 이후 규모 4에 달하는 중규모 지진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연평균 70.8회, 규모 3.0(실내의 일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이상 지진은 연평균 10.4회 발생하고 있음⁵⁾.

○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2016년 경북 경주(5.8), 2017년 경북 포항(5.4), 올 6월 부안(4.8) 지진 등 큰 규모의 지진이 농업·농촌을 위협하고 있는데,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일부 농업용 저수지에 균열이 생기기는 피해가 발생하였음.

【 최근 4년간 지진 발생 횟수 】

	규모 3 이상 횟수	총 횟수(규모 2이상)
2020년	5	68
2021년	5	70
2022년	8	77
2023년	16	106

※ 자료 : 기상청 웹사이트(<https://www.kma.go.kr>)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해는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해일, 조수

5) 기상청 온라인 지진과학관, https://www.kma.go.kr/eqk_p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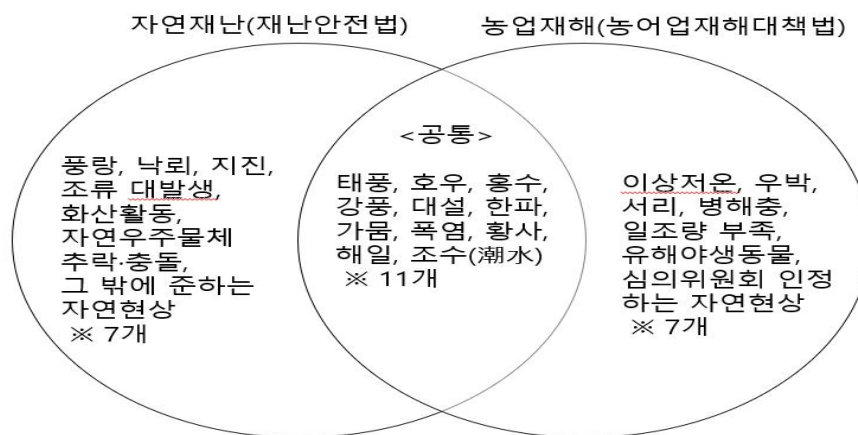
를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지진과 화산활동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만 규정되어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재해 비교 】

구 분	대상 재해	
자연재난 (행안부)	< 공통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해일, 조수(潮水)	풍랑, 낙뢰, <u>지진</u> , 조류(藻類) 대발생,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농업재해 (농식품부)		이상저온, 우박, 서리, 병해충, 일조량 부족,유해 야생동물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 두 법의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동일 재해기간 중의 피해액이 기준금액⁶⁾ 이상인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차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농업재해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발생되어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국고지원 기준 >

지원이 이루어짐7).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

【 피해복구 부담 기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 재정력 지수별 일정금액 이상 피해발생시 *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 시·군·구도 포함
농식품부	↕	(재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명시재해 (기준) 시군구별 호우·태풍·이상저온·폭염 등 50ha 이상, 대설·우박 30ha 이상, 시설·가축 피해액 3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또는 농식품부 지원기준 미만 피해 시 자체 지원

※ 자료 : <2023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 현행법 제4조8)는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어가는

시군구 재정력지수	국고지원기준	비 고
0.1미만	20억원 이상	-
0.1이상~0.2미만	26억원 이상	강원 삼척시 등 52개 시·군·구
0.2이상~0.4미만	32억원 이상	대구 서구 등 76개 시·군·구
0.4이상~0.6미만	38억원 이상	충북 청주시 등 48개 시·군·구
0.6이상	44억원 이상	경기 수원시 등 52개 시·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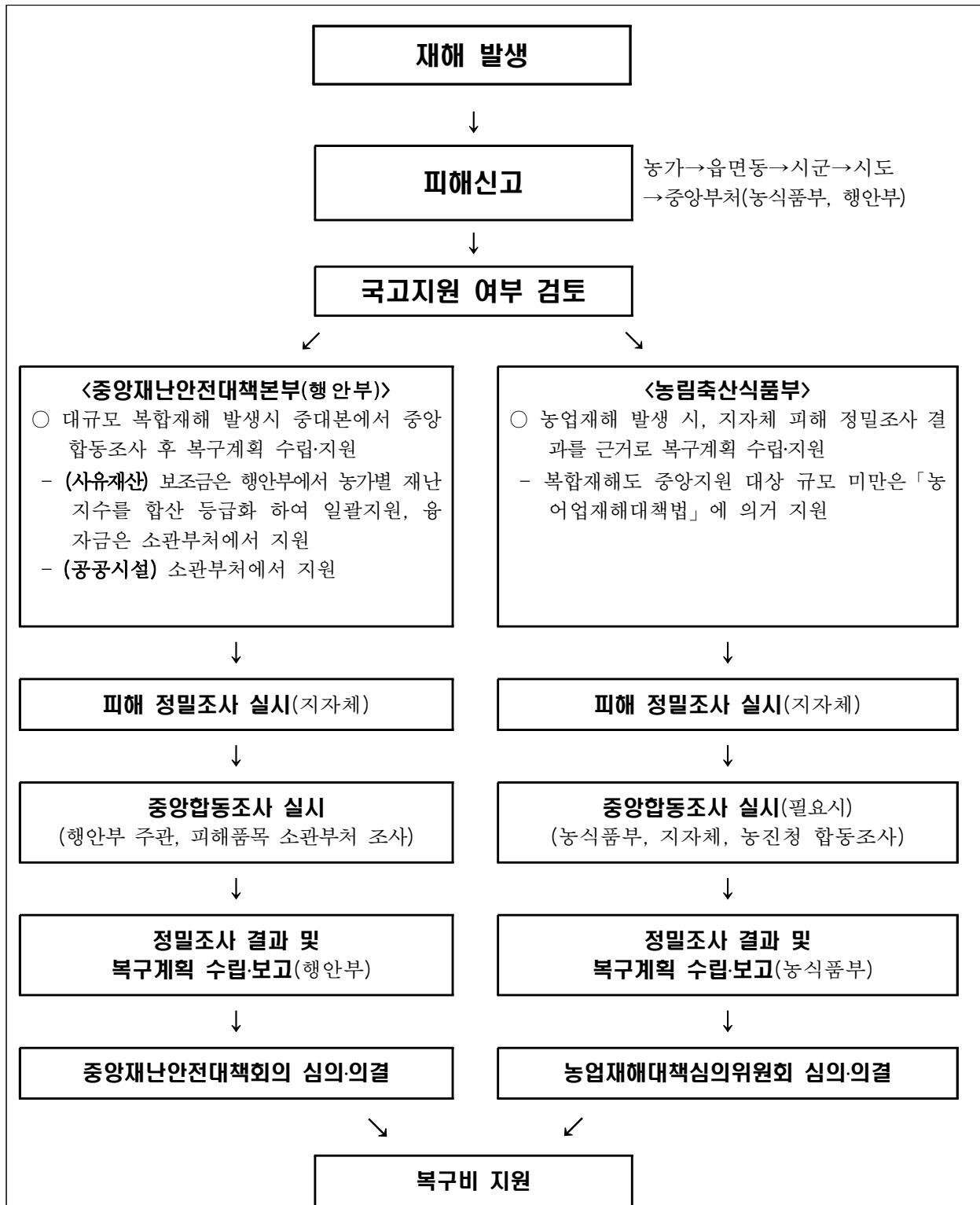
- 7)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조수, 한파, 폭염 등과 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등의 피해가 시군당 500ha 이상이거나 서리·우박·대설로 인한 농작물 또는 산림작물의 피해가 시·군당 30ha 이상이거나, 농업용시설, 농경지, 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의 피해가 시·군당 3억원 이상일 경우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함.
- 8)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음.

- 농촌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농업재해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기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진’을 추가하여 지원의 확실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복구지원 체계도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

6.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제2조의2 신설, 박수현의원안 제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세 건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	윤준병의원	박수현의원
<신설>	<u>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표</u>	<u>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해대책의 목표</u> <u>2. 기후변화에 따른 재</u>	<u>제3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u>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현행	이원택의원	윤준병의원	박수현의원
	2. <u>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3. <u>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5. <u>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6. <u>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u>	<u>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u> 3. <u>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4. <u>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u> 5. <u>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6. <u>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u> 7.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u>	2. <u>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 3.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④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u>

현행	이원택의원	윤준병의원	박수현의원
	<u>제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⑥ <u>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⑥ <u>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⑤ <u>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⑥ <u>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이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므로 별도의 농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나 협의 과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고, 기능 중복과 집행 과정의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는 입장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는 부차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5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안전 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 그 소관 사항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 제23조의 집행계획, 제24조의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제25조의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본다.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3) 검토의견

□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됨⁹⁾.

□ 세 건의 개정안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각각의 개정안은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 수립주기, 수립 내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개정안 조문 내용 비교】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기본계획 수립주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수립목적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u>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u> 을 위하여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수립절차	농업(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수립주기	3년	5년	2년

9)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266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수현의원안
내용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
	-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표 -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해대책의 목표 -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통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계획 수립주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기타	-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

※ 자료 : 세 건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재구성

□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심각해짐을 고려하여,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예방대책과 피해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무총리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의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며 향후 5년간의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은 세부대책인 집행계획을 수립·운영하게 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은 가축전염병, 저수지 사고, 농업사고를 주관유형으로, 풍수해·가뭄·폭염·한파·대설·낙뢰·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식품사고 재난구호 및 복구를 협조유형으로 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부처별, 지역별로 관할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중 농업재해대책과 관련된 계획을 현행과 같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의 방식으로 수립하는 것이 국가적 안전관리를 위한 자원과 역량의 통합적 운영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7. 재해 대책에 생산비 보장 근거 마련 등(문대림의원안(1), 이원택의원안, 제3조, 박수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 네 건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여야 하는 재해 대책의 내용과 지원의 범위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각 개정안별 재해대책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해대책에 포함될 내용】

개정안 내용			발의의원									
농작물 등의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 현행 체계 > <table><tr><td>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td><td>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td></tr><tr><td> 재해 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td><td>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td></tr></table> ⇒ < 개정안 > <table><tr><td>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td><td>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td></tr><tr><td rowspan="2"> 재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td><td> ■ 생산비 보상 </td></tr><tr><td>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td></tr></table> * 재해복구 정부예산 : ('24) 2,800억원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재해 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재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 생산비 보상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문대림·이원택·윤준병 의원안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재해 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재해 복구 (농어업 재해대책법)	■ 영농재개 및 생계안정											
재해보험 (농어업 재해보험법)	■ 생산비 보상											
	■ 생산비, 수확량 등 보상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은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함			박수현의원안									
수산양식물 등의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에 관한 사항			문대림·윤준병 의원안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원택·윤준병 의원안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이원택·윤준병 의원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윤준병의원안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이원택·윤준병 의원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1) 생산비 보장 및 경영안정 지원(문대림의원안·이원택의원안·박수현의원안·윤준병의원안)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현재 재해복구비는 단순 복구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재해를 입은 농가의 온전한 회복과 재생산 역량 확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u>마련하여야 한다</u> .	제3조(재해대책) ----- ----- ----- ----- ----- -----.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u>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u>마련하여야 한다</u>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재해 발생시의 농업용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2. ----- ----- ----- ----- <u>복구 및 생산비 보장</u> ----- -----	2. ----- ----- ----- ----- <u>복구 및 생산비 보장</u> 에----- -----		2. ----- ----- ----- ----- <u>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 보장</u> 에-----

현	행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 ----- ----- ----- ----복구 및 생산비 보장----- -----	3. (현행과 같음)			3. ----- ----- ----- ----- ----복구 및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용 보장에----- -----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후단 신설>	4. 5. (현행과 같음)	4. ----- -----어 가의 경영안정 을 위한----- -----	4. ----- ----- ----- ----- -. 이 경우 농 가와 어가에 대 한 지원은 생산 비용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4. ----- -----어 가의 경영안정 을 위한----- -----	

② 관계부처 의견

i)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상 재해지원은 ‘긴급 생계구호 및 피해복구’를 원칙으로,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비 투입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임.

○ 생산비 보장 내용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상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대과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비 투입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ii) 기획재정부

□ ‘재해대책비’에 생산비용을 포함할 경우 모든 농가에 동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재난안전기본법」상의 복구비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해대책비는 긴급피해복구와 생계구호를 위해 지급하고, 생산비용 지원은 재해보험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 국고보조 등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제6항 : 농어가 지원 기준과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준용

③ 검토의견

- ☐ 생산비는 경영비에 자가노동비, 자기자본용역비, 자기토지용역비를 합친 것을 말함.

【경영비와 생산비 구성 내용】

① 종묘비	② 비료비	③ 농약비	④ 기타재료비	⑤ 영농광열비	⑥ 감가상각비	⑦ 수리비	⑧ 임차료	⑨ 위탁료	⑩ 수선비	⑪ 고용노동비			
경영비											⑫ 자가노동비	⑬ 자기자본용역비	⑭ 자기토지용역비
생산비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비료값 폭등, 농사용 전기료 및 유류비 상승 등은 농가의 생산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 농산물 수급과 가격결정은 주로 시장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농산물은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아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농어업 재해가 발생하면 농민의 농가 수입의 감소와 영농자금 부족으로 이어져 생산력 저하와 경영불안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식량수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2023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 따르면, 농작물 복구 비용으로는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대파대(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 보통 종자대 및 비료대가 이에 해당)와 농약대를 각각 50%, 100% 지원하고 있으며, 축사 파손 시 35%의 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재해 피해 지원이 농경지와 시설물의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개정안은 ‘복구’에만 초점을 둔 생산기반에 대한 일부 보조 및 지원만으로는 현행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

지원항목	복구비 지원내용	부담률(%)			
		국 고	지 방 비	융 자	자 부 담
생계지원	○ 세대원수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70	30		
학자금 면제	○ 고등학생학자금(수업료) 6개월분 지원	70	30		
농경지 복구	○ 농경지 유실·매몰(평균심도 10cm이상)	42	18	30	10
농림시설	○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등	24.5	10.5	55	10
농작물 복구	○ 대파대 지원(종자대 및 비료대)	35	15	30	20
	○ 농약대 지원	70	30		
축사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초지 유실·매몰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	70	30
잠실 파손·유실	○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24.5	10.5	55	10
가축입식	○ 피해 가축의 입식비	35	15	30	20
누에유실·폐사	○ 당해연도 사육비	35	15	30	20
농경지 매입	○ 농경지 복구가 비 경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 지원	50	50		
공공시설	○ 방조제, 공공건물, 수리시설	100	—		
	— 국가관리	50	50		
	— 지방관리	70	30		
간접지원	○ 영농·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림축산식품부 별도지원			
가뭄대책	○ 양수 및 급수장비 구입비	50	5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

□ 한편, 2001년 도입된 농업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스스로 가입여부를 판단하여 가입하는 “임의보험” 방식으로, 가입 농지별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평년(과거 5년 평균) 대비 감소한 수확량 또는 재해 발생 시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보상하는 것이 목적임.

보험 보장기간 내 전 생육단계에 발생한 재해 피해를 종합적으

로 보상하고 있는데¹⁰⁾ 3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확량 감소를,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장하고 있음.

【 농업재해대책 및 농업재해보험 제도 비교 】

구분	농업재해대책	농업재해보험
목적	· 피해농장·시설의 “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 ⇒ 농작물 피해확산 방지, 생산 재개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	·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금으로 보상 ⇒ 농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전적으로 위험 대비
보조율	· 대파대·가축입식비 50%, 농약대 100% 등 * 단가는 실거래가의 약 50~100% 수준('23: 59.9%)	· 보험료의 50%, 운영비의 100% (농작물) 또는 50%(가축) · 지자체에서 30~40% 지원 · 농가 보험료 부담*은 10~20% * 농작물 12.5%, 가축 36%('23)
지원 대상	· 재해 피해 농가(품목 제한 X) · 농외소득 50% 이상은 복구비 지원 제외 ·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대파대·입식비 지원 제외(농약대는 지원)	· 보험 가입 농가(농작물 73종, 가축 16종, '24) * 가입 지역, 품종 등 일부 제한
농가 보상 (농작물)	· (금액) 지원단가×피해면적 · (시기) 통상 피해 발생 후 1~2개월 내 · (절차) 피해 조사(지자체) → 복구비 확정(중앙) → 복구비 지급(중앙→지자체→농가)	① <u>농작물 수확감소보장</u>(36개 품목) · (금액) 피해액(수확량감소분×가격) - 자기부담금(보험가입금액×자기부담비율) · (시기) 품목별 수확기이후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② <u>농작물 생산비보장</u>(37개 품목) · (금액) 피해면적 × 단위면적 당 생산비 × 경과비율 × 피해율 · (시기)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시마다 * 배추 등 일부 품목 예외 · (절차) 피해조사(손해평가인력) → 보험금 산정 및 지급(보험사)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10) (예시) 벼 품목에 가입했다면, 보장기간 중 발생한 호우+태풍+우박 등 모든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확감소량을 수확기에 1회 측정하여 보상 * 수확량 보장 품목: 벼, 사과, 배 등 36개/생산비 보장 품목: 무, 배추, 시설작물 등 37개

【 보장방식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 품목 】

구 분		품 목	품목 수
수확량 보장방식 (36)	과수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복분자, 오디, 무화과, 참다래, 매실, 자두, 포도, 복숭아, 유자, 살구, 밤, 대추, 오미자, 호두, 블루베리	20
	논밭작물	벼, 밀, 고구마, 옥수수, 콩, 차, 양파, 감자, 마늘, 양배추, 팔, 보리, 귀리, 수박, 두릅	15
	기타	인삼	1
생산비 보장방식 (37)	논밭작물	고추, 배추, 무, 파, 단호박, 당근, 시금치, 메밀, 브로콜리, 양상추	10
	시설벼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
	시설작물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파프리카, 멜론, 수박, 부추, 시금치, 상추,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 미나리, 쪽갓, 봄감자	23
총 계			73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농어업재해보험은 정부의 보험료 지원¹¹⁾, 대상품목 확대¹²⁾, 보장 수준 개선 등 노력을 통해 가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¹³⁾.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대신 납입하고 보험사업자의 운영비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재해보험 가입률은 52%임.

11)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 ('20) 10,158억원 → ('21) 5,740 → ('22) 5,558 → ('23) 10,042

12) '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꾸준히 목적물을 증가하여 '24년 현재 7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13) 연도별 가입률: ('01) 17.5%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최근 10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 현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6.1	21.5	27.4	29.7	32.9	38.8	45.0	49.4	49.9	52.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3)】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34~45%	86~95%	5~16% (평균 12.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황('23)】

보험료지원			자부담
정부	지자체	합계	
50%	0~50%	50~100%	0~50% (평균 21.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대책 지원 내용으로 생산비를 보장하게 된다면, 많은 농어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거나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우려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재난지원 원칙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어가에 대하여 생계안정 및 피해복구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재해대책에 생산비 보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농어업재해대책 및 보험과의 전체적인 체계와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재해대책의 내용에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 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신 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u>5.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u>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사항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적으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농어촌정비법 >

제7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과 예정지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결과와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을 기초로 논농사, 밭농사, 시설농업 등 지역별·유형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별 예정지 조사의 실시 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 수혜면적(受惠面積)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다음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일 것

1)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4) 간척사업

2) 경지 정리사업

5) 매립사업

3) 배수 개선사업

2. 제1호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인 경우: 시·도지사

③ 검토의견

☐ 개정안에 따른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개보수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여 영농피해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수립으로 이를 총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해대책을 함께 수립하기에는 그 목적과 취지 면에서 거리가 있어 보임.

< 농어촌정비법 >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업 시행지역의 토질, 토양, 경사도, 기후, 재해방지
2. 재배작물의 종류
3.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
4. 제9조제3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동의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3)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및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재해대책의 내용에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윤준병의원안)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신설> <신설>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6. <u>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u>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6. <u>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u> 7. <u>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피해는 가뭄, 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

여 발생한 피해로 보기 어려워 동법상의 지원 내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또한 윤준병의원안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의 경우, 현행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개정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③ 검토의견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병해충은 가뭄·홍수·호우 등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함.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이란 가뭄·홍수·호우(豪雨)·해일·태풍·강풍·이상저온(異常低溫)·우박·서리·조수(潮水)·대설(大雪) 또는 한파(寒波)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병해충을 말한다.

- 이원택의원안의 경우, 합성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작물이 병해충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친환경농작물 병충해 피해를 ‘농업재해 대책’에 포함하기보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등 관리·지원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포함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친환경농어업 육성 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또는 친환경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 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 방안
5. 친환경농어업의 시범단지 육성 방안
6. 친환경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 촉진 방안
7. 친환경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9. 육성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 방안
10. 제26조 및 제3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육성 방안
11.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과 윤준병의원안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해대책의 내용에 포함하여 재해대책을 보다 촘촘하게 마련려는 취지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u><신설></u> 5. (생략)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7. <u>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8. <u>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u> 9.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검토의견

□ 현행법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중복 방지 원칙¹⁴⁾에 따라 재해복구비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보험목적물에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이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보험금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개정 필요성이 낮아 보임.

14)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4) 재해대책 수립시행에 피해 최소화 및 일상회복 지원 내용 포함
(윤준병의원안 제3조제2항 신설)

①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윤준병의원안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행	윤준병의원안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u>마련한다</u> .	제3조(재해대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u> .
1. ~ 5.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제3조(재해대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해대책을 마련한다.

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및 비용의 지원 및 동원에 관한 사항
2.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3. 재해 발생 시의 어업용 시설, 어장, 수산양식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대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기본이념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8.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마련(문대림의원안 제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 문대림의원안은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증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신설>	제3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국가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의 증가 및 농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적합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 2.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3. 연중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실태파악과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에 관한 사항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와 제47조의2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41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해(旱害), 수해, 풍해, 냉해, 폭염, 기후변화 등 농업 재해에 대한 예방, 응급대책, 복구와 농업 재해보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농촌 분야

가.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나.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3) 검토의견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원예작목별 기후 조건에 맞는 작물 선정,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개선, 품목별 재해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대응전략 마련은 주요한 과제임.

☐ 개정안은 농어업재해의 증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그러나 대책에 포함될 사항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

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마목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¹⁵⁾”의 주요 사항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시행규칙에 따르면, 취약성 평가는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 변화에 관한 사항,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내용보다 구체화된 측면이 있음.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는 재해예방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이고, 재해예방의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 제5조(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등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 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는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임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농촌 분야

- 가. 농업·농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 나. 농작물재배·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다. 돌발 및 외래 병해충·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
- 라.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분석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농업·농촌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임업 분야

- 가.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
- 나.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
- 다.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라.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
- 마.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
- 바.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특별지원 근거 마련

(박수현의원안 제3조의3, 제3조의4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박수현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박수현의원안
<신 설>	제3조의3(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해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해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해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4(특별농어업재해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3에 따라 특별농어업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제61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을 선포하는 것은 중복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제69조(특별재난의 범위 및 선포 등) ①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

1.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 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
2.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3. 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②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경우에 중앙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61조에 따라 국가가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2.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
3.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5.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3) 검토의견

□ 최근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태풍과 폭설, 한파,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자연재해는 농어의 생계 및 경영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가 전체의 식량 조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주로 공공시설 등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국고지원비율을 높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자연재난의 경우, 지자체 재정력 지수¹⁶⁾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국고지원기준 피해액(18~42억원)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

16) 재정력지수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으로, 1미만은 자체 수입으로 복지 수요나 인건비 등 행정수요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뜻임. 재정력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금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을 산정하는데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부동산거래 침체나 경기 부진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 재정력지수가 하락하고, 이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뜻함(출처 : 환경 경제용어사전).

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 중 략 >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 2022년 특별재난지역 선포 6건 중 자연재난은 3건임.

8월 중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12월 중 대설·한파·강풍으로 인한 것이었음.

【최근 5년간 특별재난지역 선포 횟수】

	2018	2019	2020	2021	2022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	3	2	6
자연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3	2	2	2	3
사회재난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0	1	1	0	3

※ 자료 :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고지원 기준의 2.5배의 지원이 이루어짐. 피해지역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6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23.6.13)되기 전까지는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동산) 제외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업인, 지자체 등은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었음.

개정 전	개정 후 (현재)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농작물·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u>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18억원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u>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의 피해금액</u> 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군·구: 20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4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군·구: 26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0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군·구: 32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6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군·구: 38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2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군·구: 44억원

- 그러나 동 규정의 개정('23.6.13)으로 농작물·가축 위주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작물·가축이 추가됨을 감안하여 지원 기준도 상향조정되었음 (국고 +2억원, 특별재난지역 시군구 +5억원, 읍면동 +5천만원).

【 행정안전부 국고지원 기준 비교 】

시군구 재정력지수	현 행	개 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비고
0.1 미만	18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특별재난은 국고지원 피해액의 2.5배
0.1 이상~0.2 미만	24억원 이상	26억원 이상	65억원 이상	
0.2 이상~0.4 미만	30억원 이상	32억원 이상	80억원 이상	
0.4 이상~0.6 미만	36억원 이상	38억원 이상	95억원 이상	
0.6 이상	42억원 이상	44억원 이상	110억원 이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2023년 8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인하여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의 사과와 자두, 복숭아 등 4천7백여 농가, 3천 27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냉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바 있음(2개군/15개 읍·면, '23.8.14).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위 냉해 피해 시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여 복구비로 1,273억원을 지급(피해액 1,104억원)하였음.

【2023년 냉해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구분	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계	9개 지자체	2개 지자체	7개 지자체 15개 읍·면
충북	1개 지자체	-	• 영동군 양강면
전남	1개 지자체	-	• 나주시 금천면·봉황면
경북	7개 지자체	• 의성군 • 청송군	• 영주시 봉현면·부석면·풍기읍·순흥면 • 안동시 길안면·북후면·예안면 • 문경시 문경읍·산북면 • 봉화군 춘양면·물야면 • 상주시 모동면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이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근거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함을 고려하였을 때,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에도 조문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정안의 특별 농어업재해지역 선포의 절차적인 측면에서 장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농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농어업재해지역의 선포를 건의하도록 한 것은 조직체계를 고려할 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절차에서는 지자체장인 도지사·시장·군수가 선포요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제2조제14조 및 제15호 신설)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 차액 지원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현행	문대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외하되,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복구비 및 지원금 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②	②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현행	문대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 -----.	----- ----- ----- ----- ----- -----.		-----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u>비료대금</u>	3. ----- ----- ----- ----- ----- <u>비료대금</u> 을 포함한 <u>생산비</u>	3. ----- ----- ----- ----- ----- <u>비료대금</u> , <u>인건비</u>		3. ----- ----- ----- ----- ----- <u>비료대금</u> , <u>인건비 등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u>	
4 ~ 10. (생략)	4 ~ 10.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4 ~ 10.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③ ----- ----- -----.	
1. 어업재해로				1. -----	

현행	문대림 의원안	이원택 의원안	박수현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여기구 의원안
부령(이하 “공동 부령”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 ----- ----- ----- ----- -----.	이 경우 농가 와 어가에 대 한 보조 및 지원 기준은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 여야 한다.	----- ----- -----,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 원기준을 정 하여야 한다.	

□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음.

연도별로 보면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률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식량가격 상승과 유가 폭등, 이상기후 현상 등에서 비롯된 물가 상승은 농림어업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¹⁷⁾.

□ 현행법상 재해대책 지원 대상에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어민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손실분은 포함되지 않고, 피해복구비 지원단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농어민이 실제로 입은 피

17) 조선비즈, 한은 “이상기후, 물가 상승률 10% 기여… 식료품·과실 영향 커”, 2024.8.19.,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08/19/SUJ3CK4J2BECXHYVA54OECBTM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해에 비해 지원의 규모가 적고 피해회복 및 생계유지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각각의 개정안은 농가들이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기타재료비, 영농광열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임차료, 위탁료, 수선비, 고용노동비 + 자가노동비, 자기자본용역비, 자기토지용역비)을 보전해주거나 농어가의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가경제조사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광열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19년	1,507	-	1,108	-	4,943	-	1,469	-
2020년	1,477	△2%	1,148	4%	4,990	1%	1,452	△1%
2021년	1,441	△2%	1,148	0%	5,188	4%	1,605	11%
2022년	1,719	19%	1,144	0%	6,111	18%	1,853	15%
2023년	1,822	6%	1,355	18%	5,736	△6%	1,952	5%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2024.8.2. 제출)

- 또한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복구 및 지원 조치

를 받은 농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
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
· 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차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도 차액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려
는 것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
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
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액 및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③ 생략

- 참고로 미국은 작물 수량이 평균 단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 감소한 부분에 대해 해당 품목 수확기 평균 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재해 작물보험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CAT)]을 운영하고 있음¹⁸⁾.

2) 관계부처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상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대과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비 투입분에 대한 손실보상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이므로 생산비 수준의 피해 보상은 재해복구제도의 취지 및 정책방향,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투입된 생산비와 수확량 감소 피해를 보상하는 재해보험이 지속 확대 운영 중이고 정부가 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제도·상품 개선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¹⁸⁾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 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 p18
해외 농업재해대책 비교는 이 보고서 [참고자료] 참고3을 참조

□ 또한 현 재해복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복구 및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중 농림어업 분야만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 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입장임.

□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시 지원범위·항목은 동일해도, 피해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복구지원 기관이 달라지는 현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 시 지원기관에 따라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 국고보조 등 지원) 제3항 국가·지자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망·실종자 등 구호, 2. 주거 건축물 복구, 3. 고교생 학자금 면제, 4. 금융지원(상환연기 등), 5. 세입자 보조, 6. 세금, 건강보험료 등 경감, 7. 농·림·어업 복구지원, 8. 공공시설 피해복구

□ (실거래가 수준의 지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이 적다는 입장임.

□ (인건비 포함 지원) 현재 대파대에 인건비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정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와의 차액 지원) 타 법령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

원할 수 있도록 차액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입장임.

(2) 기획재정부

-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생산비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보험을 통한 보상과 중복되어 과도한 정부 재정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재해보험 등 민간 보험시장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민간시장을 구축하는 등 비효율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타 산업분야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행정안전부

□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지원은 보상개념이 아닌 최소한의 생계안정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한 생산비 보상은 정책보험 도입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생산비에 대한 피해 보상 개념의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보험가입 유인을 저해시켜 정책보험 정착 및 활성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으로 재해에 대한 지원이 농작물 복구와 생계안정이 기준인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될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생산비까지 보상하게 되어 복구지원 체계 전체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해양수산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지원취지는 영어재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생산비 보상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 (생산비 보장 지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재난 대책과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들과의 관계, 재해 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고려하여 “생산비 보장” 포함여부와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임.

□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 고려한 지원)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관계 부처와 실거래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정하고 있음.

보조 및 지원의 기준에 실거래가 수준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다른 법령에 따른 복구비와의 차액 지원) 현재 차액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도 차액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 농어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임.

②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보험 미가입 농가 지원 및 보험목
적물 정의 규정 신설 (박수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문대림의원안	이원택의원안	박수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어기구의원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신 설>			제4조(보조 및 지원)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는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이 출시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13. (생략) 14. “<u>농어업재해보험</u>”이란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어업재해보험</u>을 말한다. 15. “<u>보험목적물</u>”이란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5조에 따른 <u>보험목적물</u>을 말한다.		-----. 1. ~ 13. (생략) 14. “<u>농어업재해보험</u>”이란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2조제2호에 따른 <u>농어업재해보험</u>을 말한다. 15. “<u>보험목적물</u>”이란 「<u>농어업재해보험법</u>」 제5조에 따른 <u>보험목적물</u>을 말한다.	
--	--	---	--	---	--

1)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작물 대파대, 가축입식비 등을 지원 중이며,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목적물 정의와 관계 없이 대파대·가축입식비 등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2) 검토의견

- 2024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품목은 총 73개이지만 전국에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품목마다 가입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서 차이가 남.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파의 경우, 전국에서 가입이 가능하나, 쪽파(싹파)의 경우 충남 아산, 전남 보성으로 대상 사업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52%로 여전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다수 존재함

- 개정안은 보험대상 품목과 지역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려는 것으로, 농업환경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 그러나 이 경우 보험 가입의 유인이 없어지므로 많은 농어민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등 역효과 발생이 우려됨.

- 참고로 미국의 비보험작물보험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NAP)은 농업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¹⁹⁾의 긴급재해지원을 위한 제도로, 대재해보장(CAT) 수준과 동등하며 예상 생산량의 50%를 농작물 평균 시장 가격의 55%로 제공하고 있음²⁰⁾.

19) 식용작물, 사료작물, 버섯과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된 작물, 꿀이나 단풍나무 수액과 같은 특산품, 사탕수수 등과 같은 작물을 대상으로 함.

20)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 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 p20

【 농어업재해대책보험 대상품목 현황 】

연도별	대상 품목(품종/작형)	품목수 누계
2001	사과, 배	2
2002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온주밀감)	6
2006	뽕은감	7
2007	밤, 참다래, 자두	10
2008	콩(논콩/밭콩), 양파, 고추, 시설투박)	14
2009	감자(고랭지감자/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벼	20
2010	시설투박(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25
2011	시설투박(꽃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30
2012	인삼, 시설투박(멜론, 파프리카), 오디, 차	35
2013	시설투박(부추, 시금치, 상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40
2014	시설투박(배추, 가지, 파)	43
2015	시설투박(무, 백합, 카네이션)	46
2016	밀, 시설투박(미나리), 양배추, 오미자	50
2017	시설투박(쑥갓), 무화과, 유자	53
2018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메밀, 브로콜리	57
2019	감귤(만감류), 감자(봄감자), 배추(고랭지), 무(고랭지/월동), 당근, 단호박, 파(대파/ 쪽파 실파), 벼(조사료용), 옥수수(조사료용)	62
2020	호두, 팔, 시금치, 보리, 살구	67
2022	배추(가을배추)	67
2023	귀리, 시설투박, 양상추	70
2024	두릅, 블루베리, 수박, 배추(봄), 무(가을)	73
합계	73개 품목	

* '25년 도입 예정 품목은 녹두, 생강, 참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11. 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서삼석의원안 제4조제2항제9호다목 및 제4조제3항제3호다목 변경)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서삼석의원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농업정책자금의 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서삼석의원안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생략)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 ----- -----.
1. ~ 8의2. (생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가.나. (생략)	9.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u>감면</u>	다. ----- ----- ----- -----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어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③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재해를 입은 어가의 생계 안정과	3. -----

현행	서삼석의원안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나. (생략)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영어자금(營漁資金) 등 해양수산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 업 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u>감면</u>	다. ----- ----- ----- ----- <u>감면과 금리 인하</u>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현행법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 1~2년간 상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를 감면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1~2년간 융자금 상환 및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고 있음²¹⁾.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감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수익이 나오지 않고 경영위기가 지속될 경우 농업용 부채를 저리(1%)로 대환해주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도 시행 중이므로 농업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추가하려는 개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21)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농식품부 고시), 54개 자금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①정부는 재해, 가축질병, 병해충, 적조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중 농업정책자금 이자의 감면뿐만 아니라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유사입법례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에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리 인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4조(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재민 구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 가.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 나. 주택이 소파(小破)·반파(半破)·전파(全破)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침수·유실된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 지원과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된 피해를 입은 세대(세입자를 포함한다)에 속한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마.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 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생략)

12.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문금주의원안 제4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문금주의원안은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문금주의원안
<신 설>	제4조의3(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조 및 지원사업과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별도 사업 예산으로 생계안정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 ⑦ (생략)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분야에서 재해대책비, 재해보험 사업 등으로 복구지원을 추진²²⁾하고 있어 법안 제정의 실익이 떨어지며, 농업분야만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하여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또한,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와 제47조(예산의 이용 및 이체)에 따라 재해대책 재원으로 시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 사업간 이·전용 등을 통해 충분히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임.

【농어업재해대책비 예결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연도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사업명	재해대책비 (1033-302)	재해대책비(융자) ¹⁾ (1033-304)	양식등 재해대책비 (3443-302)
2019	예산	55,764	28,500	10,000
	결산	68,860	6,187	10,842
2020	예산	60,188	8,500	7,500
	결산	133,634	851	8,286
2021	예산	100,000	28,500	8,000
	결산	145,604	1,252	6,150
2022	예산	150,000	8,500	8,000
	결산	65,039	5,893	7,973
2023	예산	200,000	—	8,000
	결산	170,023		16,909
2024	예산	280,000	—	50,000

주: 1) 2023년부터 재해대책비(융자)에서 농업자금이자보전(1038-301) 사업으로 전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2) 타부처 지원 사업 사례: (행안부) 이재민 구호, (국토부) 주택 전 파·반파 복구비, (해수부) 어선·어망 복구 및 수산물 입식비 / (풍수해보험) 건축물, 소상공인 시설 등

3) 검토의견

- 문금주의원안은 농어업재해 발생 시 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를 통해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자금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기금 신설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4조제2항제3호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사업 수익금 등 자체수입 확보가 미흡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존하게 되어 국가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고, 기금 간 재원 이동이 제한되어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②기획재정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13.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우 피해보상 대책 마련

(서삼석의원안 제4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서삼석의원안은 국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또는 어가의 생산물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할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 행	서삼석의원안
<신 설>	<u>제4조의3(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① 국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또는 어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산물의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할 경우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1. 농작물 2. 산림작물 3. 수산양식물 4. 벼(이식이나 파종을 못하거나 이식이나 파종 후 정상적인 생육을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u>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어가 주민에게 평년 소득 및 생산량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2) 관계부처 의견

① 농림축산식품부

- 현행법상 지급되는 재해대책비는 재해피해 농어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영농손실은 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인 상황에서 개정안 도입 시 피해보상에 대한 중복지원과 과도한 정부 재정부담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요>

- 보험료 지원비율 : 국가 50% 지자체 평균 37.5%(지자체별 상이) 농가부담 12.5% 내외
- 2023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 (전체) 52.0% (사과) 89.0 (배) 76.2 (벼) 61.1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 (`20) 10,158억원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3년 기준, 보험료 6,077억원, 국가재보험 700, 운영비 988 등 정부예산 7,765억원 지출

-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 시 사업장 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농림어업 분야에 국한되는데, 개정안에 따라 생산량 감소분에 대한 추가지원 도입 시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생산량 감소 실태조사’ 추진 시 과도한 행정력 투입 및 조사기간 장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

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② 행정안전부

□ 태풍·홍수·가뭄 등 주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시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²³⁾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준 이하규모의 피해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을 담당(지원범위·항목은 동일)하는 현 재난지원 체계를 고려할 때, 개정안 도입 시 피해 규모에 따라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기준이 달라져 복구지원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3)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0.1미만 시군은 18억원 이상, 0.6 이상은 42억원 이상 피해 등 (근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③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지원 취지는 영어재개를 위한 적정 수준의 지원이므로, 생산량 감소피해 보상의 경우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재해보험 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3) 검토의견

- 정부가 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재해 농어가에 대한 생산량 감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농어가의 재생산 능력과 생산활동의 기반을 보장하여 조속한 피해 복구를 가능하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 피해규모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대책본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기준	① 시군별 일정규모* 이상 피해 *재정력지수 0.1 미만 시군은 18억원 이상, 0.6 이상은 42억원 이상 피해	① 행안부 지원기준 미만 피해 ② 시군당 50ha 이상 피해시
지원 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피해 복구비용 및 생계안정 비용 = 대파대 또는 농약대	
지원 내용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거시 → 대파대 또는 농약대	「농어업재해대책법」 근거시 → 대파대 또는 농약대 + (개정안) 생산량감소 피해보상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다만, 현행법상 재해대책비는 피해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 및 생계안정에 필요한 비용(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생계지원비,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생산량 손실에 대한 보상은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지원 중임.

따라서 개정안 도입 시 피해보상에 대한 재해대책과 보험 간 중복지원 가능성이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우려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14. 심의위원회 구성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5조)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5조(심의위원회) ①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① 농어업재해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5조(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① 농어업재해대책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신 설>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신 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설>	<u>기획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u> 4.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u> 5. <u>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6. <u>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u> 7.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8.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⑤ <u>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u>	<u>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3. <u>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u> 4. <u>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u> 5. <u>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6. <u>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 ⑤ <u>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u>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 1. <u>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2. <u>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3. <u>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u> 4. <u>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u> 5. <u>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6. <u>어업인단체의 대표</u> 7.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u>	<u>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되,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u> 1. <u>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2. <u>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3. <u>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u> 4. <u>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u> 5. <u>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6. <u>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u>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u>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8.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u>	<u>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u>
<신설>	⑥ 제4항제1호·제5호 및 제5항제1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4항제1호·제5호 및 제5항제1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⑦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제5조제1항의 농업 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의위원회</u> ----- ----- ----- ----- -----.	제5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u>심의위원회의</u>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 재해대책을 위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이해관계인인 농업인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다수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커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 다만, 농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농업재해에 반영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함.

3) 검토의견

- ☐ 현행법상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시행령에서 ①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③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④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개정안은 법률에 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②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③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④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그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시행령의 심의위원회 규정 및 개정안 비교 】

	시행령	개정안	
구성	20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21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 ▪ (부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	▪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 ▪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관계부처 국장급 ▪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의원안
		▪ 현행 시행령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그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 현행 시행령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령	개정안
심의 사항	▪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
	▪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의 임기	2년	2년
기타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규정 없음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14.)

□ 한편,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함.

관계부처 국장급, 농협·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 “어업인단체

의 대표”를 추가하며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재해대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기본계획 및 재해대책 등을 현실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해 당사자의 참여로 인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상 효율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령 >

제5조(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두며,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획조정실장과 해양수산부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4.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기상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해양수산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1명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4.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3항제4호·제5호 및 제4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 및 법 제4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와 지원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및 의연금(義捐金)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재해로 인한 피해의 조사
4. 군장비 및 병력의 지원 필요성 여부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재해 시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7조, 제8조)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재해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 대책에 응하여 지원을 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7조(응급조치) ①·② (생략)	제7조(응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응급조치) ①·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 ----- -----받은 자(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 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 다)----- ----- -----.	③----- ----- -----자(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다)에게--- ----- ----- -----.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제7조의2(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① ----- ----- ----- ----- -----	① 「폐기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나 수산동물(「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현행	이원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死體)을 말한다)의 사체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 -----시· <u>도지사가</u> ----- ----- -----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산동물(死體)을 말한다)의 사체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제8조(응급대책의 지원) ①· ② (생략) ③ -----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략)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5조(치료 및 보상)에 따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부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근거규정이 존재하므로 개정 실익이 낮다는 의견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응급부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은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재난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건축물·인공구조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65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이 응급조치나 긴급구조활동을 하다가 부상(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경우 및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한다)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의 응급대책·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응급대책·복구 또는 긴급구조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그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치료 및 보상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검토의견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 발생 및 우려에 따라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응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응급수송과 그 밖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러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조치·응급대

책에 종사하게 하여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려는 것으로, 재해 이후 발생한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다 두텁게 보상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의 범위에 응급조치·응급대책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따른 손실’이 전제되어야 하여 현행법상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하므로 조문 구조 및 체계상 개정 실익이 다소 낮아 보임.

16. 농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 수집·관리 근거 마련(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제9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재해 피해에 대한 통계 수집 및 관리를 통해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피해 농가·어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조·지원을 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 행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9조의2(통계의 수집·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 2.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3.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 4.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 5.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지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관리,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4조에 따라 재난에 관한 통계 등을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법률 간 상충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제74조(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하는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연계 운영되거나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검토의견

□ 재해로 인한 농어민 피해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농작물 생산량 통계 등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⁴⁾.

□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 피해 규모,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 등을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여 재해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피해 농가·어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조·지원을 하려는 취지임.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한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국가 전체적인 재난 및 각종 사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의 내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NDMS는 중앙·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황전파, 통합문자, 홍수·가뭄·지진·하천·기상정보, 통합 CCTV, 국가기반시설 현황, 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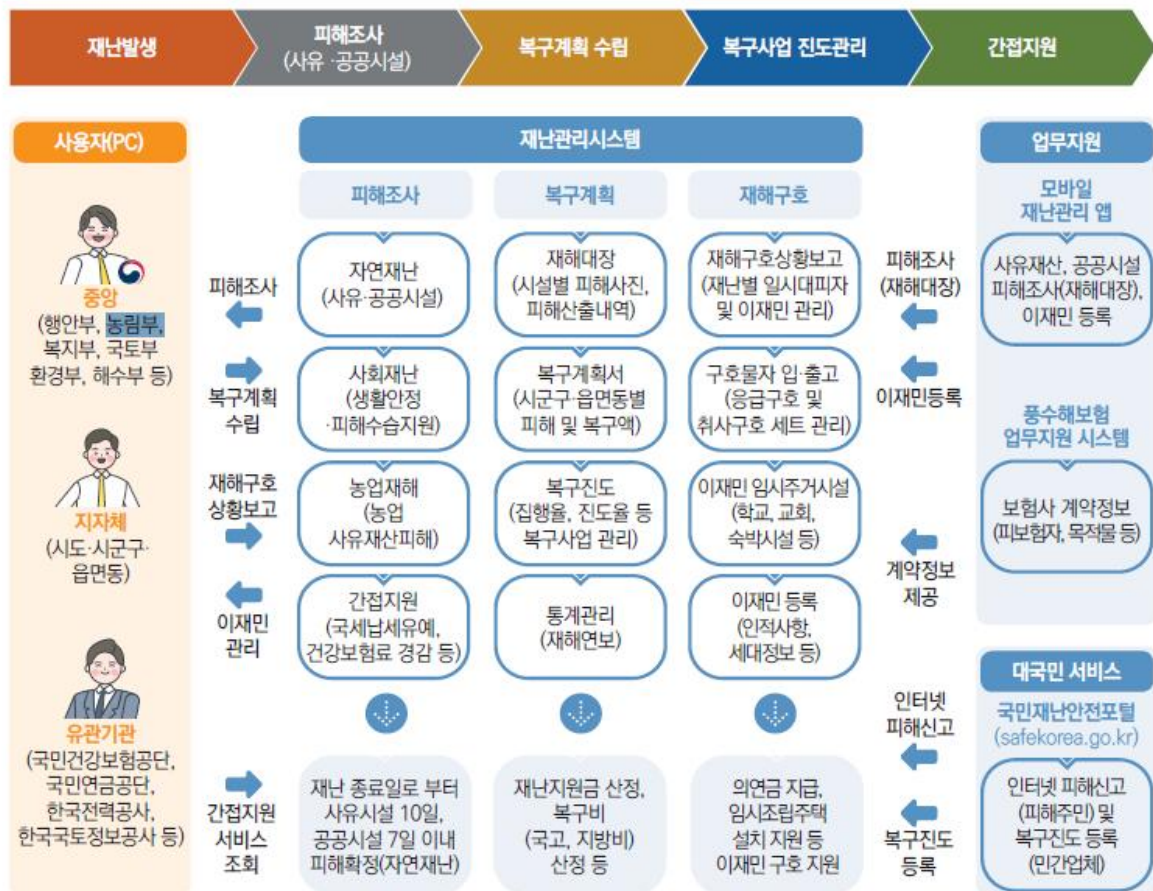
24) 편지은, “농업생산통계의 정확성 논란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1.12.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등 분야별 재난·안전시스템 총 34종을 통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사유재산 피해를 조사하고 입력하여 복구계획 수립과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상습침수농경지 32만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비 배수장, 배수로 등 재해예방대책 사업을 추진 중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복구분야】



※ 자료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현황>, 2023.

17. 재해를 입은 농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 안내 근거 마련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안 제9조의3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이원택의원안 및 윤준병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이원택의원안·윤준병의원안
<신 설>	제9조의3(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 「행정절차법」 제40조에 따르면,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규정의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임.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3)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재해 피해 시 신속한 복구와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재해를 입어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이하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재해 발생 ‘지역’의 농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고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 제2항은 신고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 농가의 피해신고 관련규정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8. 부칙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들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5년 1월 1일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구 분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일	적용례
문대림의원안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추가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예방대책 조항 신설 ■ 보조 및 지원에 생산비 포함	공포 후 6개월	—
문금주의원안 (1015)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및 ‘지진’ 추가	공포한 날	
이원택의원안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보조 및 지원에 생산비 포함 및 차액 지원 근거 마련 ■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개정 등	공포 후 6개월	
문금주의원안 (1711)	■ 농어업재해대책 기금 설치	2025년 1월 1일	
정희용의원안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추가	공포한 날	
박수현의원안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 보조 및 지원에 생산비 포함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 보상 대책 마련	공포 후 6개월	
서삼석의원안	■ 생산량 감소 시 피해보상 대책 마련 및 실태조사 등		

윤준병의원안	■ 농업재해 정의에 ‘이상고온’ 추가 ■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개정 ■ 통계의 수집·관리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 보상 대책 마련		
여기구의원안	■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을 고려 ■ 불가피한 사유로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 보상 대책 마련		

2) 검토의견

□ 다만, 개정안 제4조제2항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보조와 지원의 범위를 생산비와 인건비 등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어서 새로 시행되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임.

<부칙 수정의견>

제2조(보조와 지원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조와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부터 적용한다.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농업재해 포함)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건보료, 전기·가스·통신 요금 감면 등)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table><tr><th>분야별</th><th>제공기관</th><th>상환조건</th><th>이자</th></tr><tr><td>농업</td><td>농협</td><td>5년거치 10년상환</td><td>1.5%</td></tr><tr><td>어업</td><td>수협</td><td>〃</td><td>〃</td></tr><tr><td>임업</td><td>산림조합</td><td>〃</td><td>〃</td></tr><tr><td>주택</td><td>우리은행</td><td>3년 거치 17년 상환</td><td>〃</td></tr><tr><td rowspan="2">중소기업·소상공인</td><td>일반은행</td><td>2년 거치 3년 상환</td><td>2.0%</td></tr><tr><td>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td><td>〃</td><td>1.9%</td></tr></table>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보증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분야별	제공기관	상환조건	이자																													
농업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1.5%																													
어업	수협	〃	〃																													
임업	산림조합	〃	〃																													
주택	우리은행	3년 거치 17년 상환	〃																													
중소기업·소상공인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9%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 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 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참고 2

농어업재해대책비 집행 현황(2023년)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한파 (1.24.~28.)	제주지역 한파로 월동채소 등 연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3,055호	- 농작물 4,704ha * 월동무 3,510, 양배추 291, 브로콜리 270, 콜라비 122, 등 - 가축폐사 1,501마리*, 꿀벌 5,129군 * 닭 1,500마리, 말 1마리	13,552백만원 - 보조 12,287(국비 8,601) - 융자 759 - 자부담 506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13
대설 (2.9.~10.)	경남지역 대설로 비닐하우스·과 수시설 파손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1호	- 농업시설 30ha * 비닐하우스 1, 인삼시설 1.2, 과수시설 28 등 - 농작물 5.4ha * 복숭아 2.5, 블루베리 2.3, 체리 0.3, 딸기 0.2 등	822백만원 - 보조 307(국비 215) - 융자 428 - 자부담 87 * 정책자금 상환연기: 62
이상저온 (3~4월)	4월 냉해로 14개 시·도(경북, 전 남, 충북, 전북, 충남, 경남, 경기, 강원, 세종, 울산, 대구, 대전, 광 주, 부산) 139개 시·군·구 과수 꽃눈 고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76,652호	- 농작물 44,765ha * 과수 37,864ha, 채소류 4,910, 수신훈 1,991 등	<중대본 심의(우리부 지원)> 120,810백만원 - 보조 120,682(국비 75,644) - 융자 77 / 자부담 51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688
호우·강풍 (5.4~6. 및 5.28~30)	호우·강풍으로 5개 시·도(충남, 전북, 전남, 광주, 제주)에서 농작 물 침수, 도복, 잎·줄기 꺾임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8,119호	- 농작물 8,057ha * 맥류 5,238, 전작 1,884, 채 소 637, 과수 93 등 - 꿀벌 7군 - 농경지 0.9ha	10,552백만원 - 보조 9,088(국비 6,317) - 융자 881 - 자부담 583 * 정책자금 상환연기 3,882
우박·강풍 (6.8~15)	7개 도(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남, 경기, 전남)에서 우박·호 우·강풍으로 사과 흠집, 잎 파열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9,460호	- 농작물 5,150ha * 과수 3,7812, 전작 242., 채 소 698, 특작·화훼 196 등 - 농업시설 1.5ha * 비닐하우스 0.2, 인삼시설 1.2, 축산 0.1 등 - 농경지 0.3ha	16,897백만원 - 보조 15,515(국비 10,480) - 융자 856 - 자부담 526 * 정책자금 상환연기 13,896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재해명	피해개요	피해내역	복구비
호우(6.27~7.27) 및 태풍 카눈	16개 시·도에서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 가축 폐사, 비닐하우스, 수리시설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107,078호	- 농작물 71,416ha * 벼 37,317, 콩 14,661, 채소류 7,752, 과수 4,501 등 - 농업시설 269ha * 비닐하우스 92, 양액시설 72과수시설 68, 인삼시설 31 축산시설 5 등 - 가축폐사 913천마리*, 꿀벌 13천군, 기타 곤충 43천kg * 닭 852,808마리, 소 826, 돼지 3,867 등 - 농경지 1,490ha - 공공시설 689개소	<중대본 심의> 341,972백만원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우리부 지원> - 보조(위로금) 73,947(국비 49,887)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14,374, 자부담 7,527 * 정책자금 상환연기 129,110
호우 (9.15~17, 9.20~21) 및 우박 (10.14, 26)	7개 도(경남,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충북, 강원)에서 호우와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과수 낙과·흠집, 벼 도복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수: 22,986호	- 농작물 6,697ha * 단감 2,404, 사과 2,218, 벼 1,187, 채소류 673 등 - 농업시설 0.1ha - 농경지 1.5ha	17,940백만원 - 보조 17,170(국비 12,019) - 융자 469 - 자부담 301 * 정책자금 상환연기 3,190
우박 (11.17)	제주에 우박이 내려 감귤 낙과·흠집, 쪽파 꺾임 피해 * 피해 농가수: 145호	- 농작물 43.9ha * 감귤 42.4, 쪽파 1.5	140백만원 - 보조 140(국비 98)
대설·한파 (12.20~22)	대설·한파로 인한 4개도(전남, 전북, 제주, 충남) 양파, 대파, 무 등 농작물 언피해 및 농업시설 파손 * 피해 농가수: 2,189호	- 농작물 972.6ha * 양파 597.2, 대파 272.9, 무 70.2 등 - 농업시설 22.8ha * 비닐하우스 20.5, 축산시설 1.9, 과수시설 0.4	6,820백만원 - 보조 4,135(국비 2,895) - 융자 2,231 - 자부담 454 * 정책자금 상환연기 9,801
합 계		- 농작물 141,810.9ha - 농업시설 323.4ha - 가축폐사 914.5천마리, 꿀벌 18천군, 기타곤충 43천kg - 농경지 1,492.7ha - 공공시설 689개소 * 피해 농가수: 229,785호	<합계: 529,505백만원> (중대본) : 138,460 - 보조(사유): 138,460(국비 90,378) (농식품부) : 391,045 - 보조(사유): 233,271(국비 166,156) - 보조(공공): 107,664(국비 55,747) * '23년 6,860 교부, '24년 48,887 교부 - 융자 : 20,075 / 자부담 : 10,035 * 정책자금 상환연기: 176,442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2024.8.2.제출)

참고 3 해외 농업 재해대책 비교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미국/대재해 작물보험 (Catastrophic Risk Protection, CAT)	심각한 재해 발생시 농업 경영 회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해보장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과 가축	-작물수량이 평균 단수의 50% 이하로 감소한 농가 -실제 생산량(A c t u a l Production History)과 최소 4년 동안의 평균 농가별 수확량을 기반으로 판단	-해당품목 수확기 평균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보험료는 전액 연방정부에서 지원, 농가는 관리수수료만 부담 (작물당 655달러)	-1994년 제정된 작물보험개혁법 (Federal Crop Insurance Reform Act)에 의해 도입 -신규농, 영세농 관리수수료 면제 -보장 범위는 낮지만 보험료 전액 보조 -관리주체: 위험관리청(RMA)
미국/비보험 작물 보험 (Noninsured Crop Assistance Program, NAP)	농업보험 가입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농작물을 생산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재해지원 제도	-식용으로 재배되는 농작물 -토종사료 포함, 가축소비를 위해 식재되는 곡물 및 사료작물 -면화 및 아마 등 섬유용 작물 -버섯, 화훼 등 통제된 환경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꿀, 단풍수액 등 특산품 -바다귀리, 해초 -사탕수수, 바이오매스수수 -재생전기, 재생바이오 연료 등공업원료로 재배되는 작물	-생산위험을 겪게 농산물을 재배한 토지소유자, 임차인, 소작인 -평균 조정 총소득이 연간 90만 달러 미만 -농가는 비보험 작물 보험 (NAP)과 전농장 수익 보호 프로그램(WFRP) 모두 참여가능 (중복지원불가)	-2014년 농업법 개정 이후 평균 시장가격의 55%에서 100%로 지불율을 상향조정, 보장수준은 생산량의 50~65% 범위에서 증가하는 적용 범위를 승인 -2018년 이후 곡물당 서비스수수료 작물당 325달러, 생산자당 한도는 최대 825달러로 인상	-축산농가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료 구입비용 지원 -신규농, 영세농, 자격취득중인 농민, 목장주 등에게 관리수수료 면제 및 할증료 50% 혜택 -관리주체: 농무부의 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수경재배, 인삼, 잔디 -종자용 작물			
미 국 / 전 (全) 농 장 수익보험 (Whole Farm Revenue Protection , WFRP)	직거래 시장, 로컬시장, 특산물 판매 등에 참여하는 로컬푸드 생산자를 위해 특별히 개발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과 가축	보험기간 중 판매하는 상품 또는 재 판매를 위해 구입하는 상품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얻게 될 수익의 손실을 보호	-기본보장 옵션은 CAT 수준과 동등 -예상 생산량의 50%를 농작물 평균 시장가격의 55% 제공 -농장 생산물의 가짓수에 따라 보증수준 차이 발생(3종류 이상 재배할 때 80~85% 보장범위에서 보험료 최대 할인 받음)	-국가의 모든 카운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작물 보험 옵션- 신규농은 보험료 할인 (10%)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관리주체: 위험관리청(RMA)
캐나다/농업투자 계정 (AgriInvest) 프로그램	자연재해나 시장위험 등 포괄적인 위험 상황에 대응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과 가축	농가소득이 15% 미만 감소했을 때 지급	농민은 매년 허용 가능한 순 매출 (Allowable Net Sales, ANS)의 최대 100%를 AgriInvest 계정에 입금-허용 가능한 순 매출 (ANS)의 1%에 대한 정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AgriInvest 계정에서 자금 인출 가능	1단계 위험 상황에서 지급하는 비과세 저축계좌
캐나다/농업안정 (Agri Stability) 프로그램	생산 손실, 비용 증가 및 시장 상황 등으로 인한 농업 이익률 보호	농장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과 가축	해당 연도의 이익률(margin)이 역사적 기준 이익률보다 15%~30% 미만일 때(2단계), 30%~100%(3단계)일 때, 네거티브 마진(4단계)등에서 지급됨	지난 5년간 이익률 중에서 최고 및 최저를 뺀 나머지 3년의 평균 값에서 기준 이하로 순이익이 감소했을 때 지급	2~4단계 위험 상황에서 지급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캐나다/농업보험 (Agri Insurance) 프로그램	자연 재해로 인한 농민의 소득 안정	대부분의 작물	생산량 감소 10~50%일 때 지급	보험료는 농민이 40%, 주정부 36%, 지방정부 24% 분담, 행정비용은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60대 40으로 부담	각 지방의 공기업 또는 지방 농업부의 지사가 담당
캐나다/농업구호 (Agri Recovery)	경기 변동에 대비한 농가소득 지원뿐 아니라 이례적인 재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해지원	모든 작물과 가축	특별 재해로 정의될 때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는 지원과의 잔여 격차, 부족분 지급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해피해 보상비율은 60대 40이며 농민들은 보험료를 내지 않음	보장범위와 위기대응 측면에서 AgriStability와 중복
일본/농업경영수입보험 프로그램 Revenue Insurance program	자연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 판매가격 감소, 시장 변동으로 인한 수익 손실 보상	평균 5년 수입 기반 90% 미만 하락	복식부기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신고하는 생산자는 수입보험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기준수입과 해당 연도 수입 차액의 최대 90%까지 보상	-농업재해보상법을 2017년 ‘농업보험법’으로 개정한 이후, 2019년 1월 수입보험제도 실시 -수입보험제도 실시 이전 농업소득 보장 정책 도입을 위한 5년 간 농가 소득 자료에 대한 축적 등의 준비기간을 거침
일본/농업공제제도 Agricultural Mutual Relief Insurance System	작물 별로 자연재해, 해충·질병 발생, 화재 등 기타 사건 발생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1) 쌀, 밀, 보리 (의무) 2) 밭작물(감자, 콩, 사탕수수, 녹차, 옥수수, 양파, 호박, 흙, 양조) 3) 축산(의무) 4) 과일, 과일 나무 5) 원예 시설	-보상비율은 생산량 손실, 피해 규모, 지역평균 등에 따라 50%~90% -농업인이 부담하는 실질 보험료율은 평균 2.2% 정도 -2017년에 기존의 농업재해보상법을 농업보험법으로 전면 개정	-AMR 협회와 지방정부가 각각 보험 프로그램 운영 -AMR 협회와 지방정부의 부채는 현 AMR 연맹에 의해 재보험되며, 중앙정부의 부채는 국가정부에 의해 재보험됨 -중앙 정부는	1947년 “농업재해보상법(農業災害補償法)”을 제정하고 농업공제제도 도입

구분	목적	대상 작물	대상	지원방식	비고
				AMR 협회나 시 정부 보험 프로 그램에 가입하는 생산자들을 위해 생산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	

※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작물 재해대책 등 농가 경영안정 방안”, 2022.2.